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49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이성윤 · 민형배 · 안호영
한병도 · 윤준병 · 문정복
이원택 · 서영교 · 최혁진
서삼석 · 박지원 · 박균택
최기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미흡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부 조직·인력·시설 등을 수도권 등으로 재이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혁신도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사회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따라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전완료공공기관이 반드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승인 받도록 하고, 조직·인원·시설 등을 재이전하는 경우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이전완료공공기관 관리방안의 수립) ① 제4조에 따라 이전을 완료한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완료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후관리방안(이하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기관의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잔류기관(이전완료공공기관의 조직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하지 아니한 조직을 말한다)의 업무,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이전한 지역의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이전완료공공기관 관리 방안의 수립) ① 제4조에 따라 이전을 완료한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완료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후관리방안(이하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 <u>1. 이전기관의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항</u> <u>2. 수도권 잔류기관(이전완료공공기관의 조직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하지 아니한 조직을 말한다)의 업무,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이전한 지역의</u>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③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